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3)

서영호 /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I. 건설위탁의 범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예시>

- 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主)인 공사를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법 제52조제1항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5.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6. 환경관련시설업자의 건설위탁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법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II.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 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 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일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



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은 사실
- 총포·도금·화약류의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2.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 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III. 서면 교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 시기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 사항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捺印하여야 하며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일자
-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즉, 목적물)의 내용
- ③ 목적물의 납품·인도 시기 및 장소
- ④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⑤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함)
- ⑥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 ⑦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 기일

IV. 서류 보존

1. 보존해야 할 서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다음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은 보존 서류로 인정된다.



- ①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서면
-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
-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 관련 서류
-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관련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포함함)
- ⑤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관련 서류
- ⑥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관련 서류
- ⑦ 관세환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관련 서류
- ⑧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원재료의 내용,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관련 서류
- ⑨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관련 서류

2. 서류 보존 기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①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②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③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V. 적법한 서면 교부에 대한 판단기준

- ①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②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한 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③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④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⑤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⑥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⑦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 ⑧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허위서면교부로 본다.



- ⑨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히 갖춘 서면(예 :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 ⑩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본다.
 - Ⓓ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본다.

VI.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 ②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③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 ④ 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 ⑤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⑥ 기계류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 ⑦ 전기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 ⑧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 ⑨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
- ⑩ 건축설계 표준하도급계약서
- ⑪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⑫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하여 과징금부과, 법위반 사실 공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을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공정**